

함께하는 FTA

June 2015 vol. 37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본 중국의 통상전략

한·중 FTA 활용 비즈니스 노하우

인터뷰: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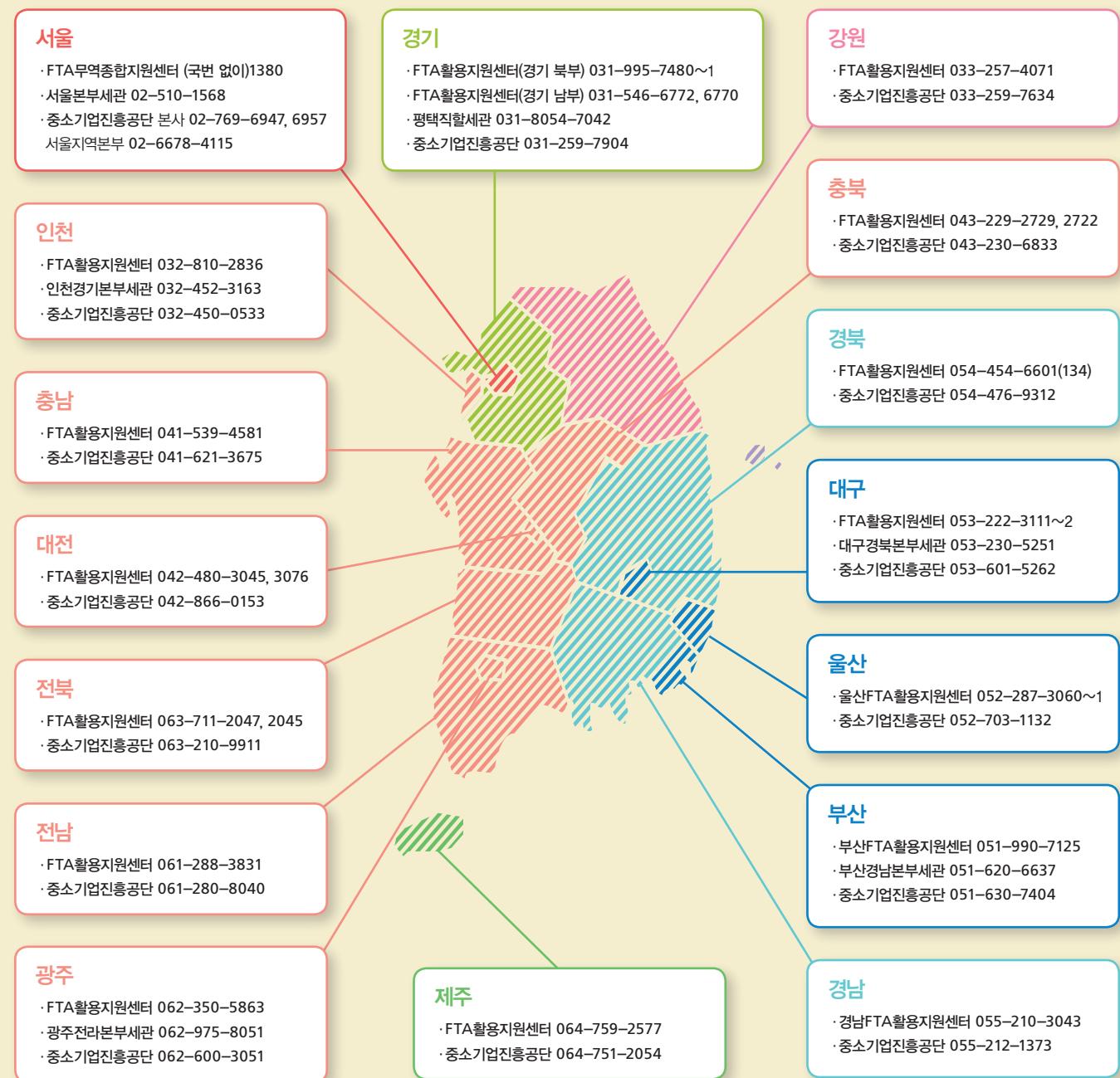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중국 시장 진출? 고민보단 행동할 때!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을 처음 본 것은 올해 2월 무역아카데미에서 개설한 '중국에 서 通(통)하는 중국通 주재원 과정'을 청강할 때였다. 총 32시간의 긴 강의의 좌장 역할을 하며 매일 수강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후 중국 실무 관련 세미나 때 종종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간의 중국 불과 올해 2월 가서 명된 한·중 FTA 등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자 분야에서 열심인 실무자들의 자식·경험을 초보자들이 먹기 좋도록 밥상에 올려주는 요리사는 흔치 않다. 이런 이유로 요즘 박 소장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를 찾는 곳이 많다.

열한 살 때부터 쿵푸를 배운 그의 어릴 적 꿈은 도장을 여는 것이었다. 현재 쿵푸 4단이다. 정통 쿵푸를 배우겠다는 생각에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며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를 흉내 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후 중국어를 배울 때 한 번 들은 단어는 잊지 않을 정도로 입에 착 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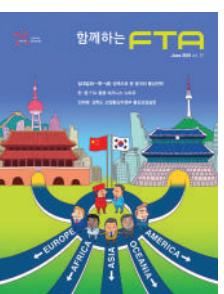
이런 중국에 대한 관심은 중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특히 1999년부터 중국 명문인 칭화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중국 진출

을 도와준 경험이 그의 밑천이 됐다. 주중한 국대사관 상무처 경제통상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지내며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투자 컨설팅, 중국 기업 소개, 협상 지원 등을 담당했다. 2004년 대사관을 나올 때 그간 상담했던 국내 기업의 수를 세어 보니 3,000개가 넘었다. 또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중국 공무원들도 많이 알게 된 것도 인맥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그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중이다. 중국 시장의 가능성은 박사님들보다 기업들이 먼저 안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 내 사업자등록이라던지 각종 법률·조세·통관 제도인데, 이를 조언할 전문가가 아직도 많지 않다. 그는 중국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에 이렇게 말한다. "사장님, 돈부터 버십시오. 고민은 그 다음에 하십시오." 중국 비즈니스에서 어떤 어려움도 해법은 다 있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



Contents

June 2015 vol. 37



COVER STORY

가서명된 한·중 FTA가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FTA로 더욱 긴밀해진 양국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힘을 합친다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5년 6월 4일(통권 37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Issue Focus

- 04 정식서명한 한·베트남 FTA

- 06 인터뷰:
팜 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

- 08 베트남 시장의 특징 및
한국 기업들의 진출현황
정상현 과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

Cover Story

한·중 FTA를 향해 뛴다

- 12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활용전략 세미나
- 14 현장탐방:
중국인증심사 전문 CCIC 코리아
- 16 2014년 대중 수출품 분석 및 대응방안

FTA Cartoon

- 19 FTA로 베트남 시장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안종만

Power Interview

- 20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Special Report

- 22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동향 및 시사점
송승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 24 발효 앞둔 한·콜롬비아 FTA의 기대효과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FTA Study

- 26 지상중계: FTA 사후검증 세미나
28 자유무역의 역사:
정부조달협정(GPA)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 30 미국·중국·EU의
중동 FTA 전략과 시사점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①무역 그리고 지식재산권
손보인 변호사·변리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34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⑫패션 액세서리(장신구)
이민선 관세사(FTA무역종합센터 차이나데스크)

- 36 실전 FTA 활용 노하우:
농산물의 FTA 활용하기
유영진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실)

- 38 한·미 FTA 사후검증 성공 노하우
유영웅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Art & Cultur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⑧보르헤스의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FTA News

- 42 제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등

FTA Square

-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정식서명한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 높인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5월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임석 하에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다.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2012년 8 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집중적인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올해 3월 28일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완료한 바 있다.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에서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돋고 양국 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2007년



한·베트남 FTA 협정문 구성

• 서문	
① 일반 규정	
②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양허표A · 한국 양허표B · 베트남 양허표A · 베트남 양허표B
③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특정 물품의 취급 · 원산지증명서
④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⑥ 기술무역장벽	
⑦ 무역구제	
⑧ 서비스무역	
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서비스 · 통신 · 자연인의 이동 · 한국 서비스 양허표 ·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⑨ 투자	
⑩ 전자상거래*	
⑪ 경쟁	
⑫ 지식재산권	
⑬ 경제 협력	
⑭ 투명성	
⑮ 분쟁 해결	
⑯ 예외	
⑰ 제도 및 최종 조항	

*전자상거래는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로 채택됐다.

한·베트남 FTA에서 타결된 한국의 주요 품목 양허 현황

주요 품목(관세율)	양허유형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10년 철폐
믹서(25%)	5년 철폐
화장품(10~25%)	10년 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 내 철폐
차량용 엔진(5~25%)	3~7년 철폐
화물차(5~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10년 철폐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3~10년 철폐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7~10년 철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6월 발효된 한·아세안(베트남 등 10개국) FTA보다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와 무역 촉진 규범을 도입했다.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증가 기대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우리나라 GDP+상대국 GDP)는 발효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60.4%, 타결 기준으로 약 73.5%에 이른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이미 개방된 상태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최다 투자국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189억 달러, 9,111건(2014년 누계,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 개 한국기업이 진출 중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금 보장, 수용 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트남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팜 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
“한국·베트남 역량 합치면 세계 시장도 거뜬”

팜 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는 ‘함께하는 FTA’와의 인터뷰가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은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 전으로, 베트남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 새 한·베트남 FTA는 협상타결·가서명·서명을 완료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데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했을 것이다. 팜 후찌 대사로부터 그간 양국의 노력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베트남 FTA가 이번 달에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한·베트남 FTA는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베트남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베트남 FTA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의 이익 균형을 잘 맞춘 높은 수준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과 일치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의 세계화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셋째로, 한국과 베트남의 양자 관계가 그간 더 심화돼 왔기 때문에 FTA를 통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 협정은 베트남 경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하기도 하고, 약간의 저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트남은 그런 도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베트남 협상 타결에서부터 정식서명까지 바쁘게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도 많은 역할을 했겠지요?

알다시피 2014년 12월 10일 한국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FTA 협상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5월 5일 하노이에서 서명하기까지 양국이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과 한국 협상팀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부터 서명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양국 협상 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포괄적이면서 균형을 이룬 협정이 이뤄졌고, 이는 양국의 보다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통상전략 및 FTA 추진 전략이 궁금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TPP와 RCEP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 EU, EFTA와도 협상 중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FTA 정책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한국 친구들로부터 베트남과 한국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들어 왔습니다. FTA에 있어 베트남의 접근·추진 방법은 또 하나의 유사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또한 FTA에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 EU,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도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이 맺은 FTA를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FTA를 체결했고, 현재 TPP, RCEP에 참여하고 있으며, EU, EFTA, 러시아 관세동맹,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FTA 협상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FTA는 적극적 세계화 전략과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접근, 그리고 우리의 법률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할 기회라는 점은 FTA로 얻게 되는 명확한 두 가지 이점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욱 깊이 참여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는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까요? 양국이 FTA를 통해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베트남 FTA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경제권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입니다. 한·베트남 FTA는 양국의 비교 우위를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며 양국 경제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서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좋은 위치입니다. 더불어 양국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기업들에게는 시장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글 정상현 과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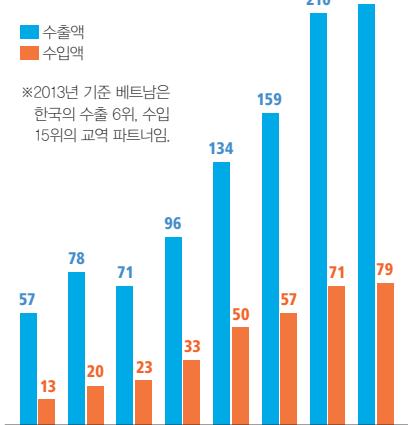
01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한국 제품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5월 13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활용설명회'에 참가한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 02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전자·부품, IT, 1차금속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5월 25일 서울에서 롯데그룹과 베트남 호찌민시가 '투티엠지구 에코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모습. 03 지난 5월 13~14일 하노이,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활용설명회' 모습.

베트남 시장의 특징 및 한국 기업들의 진출현황

대(對)베트남 투자 1위는 한국... FTA로 한국제품 수입 확대 기대

베트남은 1986년 '도이마이(刷新)정책(개혁·개방)' 채택 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나가고 있으며, 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4.09%로 2013년 6%보다 더욱 낮아지며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사상 최대인 2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수출 1,501.9억 달러, 수입 1,480.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베트남은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베트남 국내 경제 불안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체됐지만, 2011년 이후 증액투자가 늘어나면서 성장세 국면을 맞고 있다. 2014년 202.4억 달러(신규 156.5억 달러, 증액 45.9억 달러)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 투자)를 유치하며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년 GDP의 12~18% 규모의 신규 FDI 유치, 7~9% 규모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등 외국자본 유입 및 사회인프라 구축이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베트남의 높은 수출의존도, 공공부채 증가 및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시 베트남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베트남의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 수준이다. 미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문제와 중국, 일본, 러시아의 낮은 경제 성장은 베트남 수출실적 전반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

용할 수도 있다. 2014년 베트남 정부는 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10억 달러의 공채를 발행했지만 대부분 부채상환 연장에 사용됐으며, 2015년 공공부채 비율 상한선인 GDP 65% 경계선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유국인 베트남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 추출량 감소 시 베트남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 따르면 원유 산출량 30% 감소 시, 2015년 경제 성장률은 0.8~1.2% 감소, 경상수지는 29억7,600만 달러 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경상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경제 펀더멘털의 건전성에 따라 유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로 한국의 소재·부품 수출 및 투자진출 가속화 전망

2014년 한국은 베트남으로 수출 223.3억 달러, 수입 79.9억 달러로

최근 5년간 대(對)베트남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프로젝트수	신규	969	1,091	1,100	1,275
	증자	269	374	435	563
금액	신규	17,230	11,559	7,854	14,272
	증자	1,400	3,137	5,159	7,355
총투자액	18,630	14,696	14,013	21,628	20,241

자료: 베트남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총 교역액 303.2억 달러, 무역수지 143.4억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8위 교역대상국(수출 6위, 수입 15위)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3위의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이다.

1988~2014년 누적기준 대베트남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증자 포함) 순위는 한국이 372.3억 달러(투자건수 4,110건)로 1위를 기록했으며, 2014년 한 해 동안의 대베트남 투자액도 한국이 73억 달러로 싱가포르(28억 달러), 일본(21억 달러), 대만(12억 달러)에 크게 앞섰다.

2014년 말 누적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금액은 북부지역(하노이~다낭)에 약 51%,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다낭 이남)에 약 49% 분포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전자·부품, IT, 1차금속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롯데마트, 롯데리아, 카페베네, 뚜레쥬르 등 우리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방식도 과거 개별·소규모 투자에서 대형화·동반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1·2차 협력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입대체를 위해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말 누계기준으로 우리기업들은 제조업 분야 64.0%, 부동산경영 18.7%, 건설 6.4%, 물류운수 2.5% 순으로 투자했으며, TPP에 대비해 원단 생산 기업 등 봉제, 섬유 소재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삼성전자는 투자규모가 가장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베트남 박닌성, 타이응웬성, 호치민시 등에 총 112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4년에는 타이응웬성 휴대폰 제2공장에 30억 달러,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TV 중심의 소비자기전(CE) 복합단지 건설에 14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4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들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및 투자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FTA 발효로 2020년까지 교역 3배 증가 기대

2015년 5월 13~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베트남 진

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각각 '한·베트남 FTA 활용설명회'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주호치민 한국총영사관,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 하노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이뤄지는 관세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설명회에서는 한·베트남 FTA 체결 및 정식서명에 따른 양허안 내용, 상품별 관세 인하 확인 방법 및 우리 진출기업들의 활용전략 방안 뿐만 아니라 TPP, AEC(아세안경제공동체) 등 다변화되는 베트남의 통상환경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시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과거에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거점으로 베트남에 주로 진출했으나, 최근 들어 아세안 통합의 가속화와 베트남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베트남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도 증가 추세이다. 원자·작물 가공업체 방림네오텍스(주) 김옥수 전무는 "이번 FTA로 인해 나일론 직물, 부직포 등의 관세가 3년 내 없어 진다고 하니 미국으로의 수출경쟁력 뿐 아니라 베트남 내수시장으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한 기업인은 "자동차부품 관세가 5~10년 내 철폐되므로 이를 활용해 베트남 내 영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2014년 12월 KOTRA에서 베트남 주요 바이어 166개사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한·베트남 FTA 이후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0% 이상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7%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IT, 의약·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 한국제품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진출기업들은 한·베트남 FTA로 중국 및 아세안 등 특혜 관세를 받는 제품들과의 경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FTA를 활용, 베트남 시장의 맞춤형 경제 한류 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삼성전자, LG 전자 등 우리 대기업 투자 및 관련 협력 중소기업의 진출로 더욱 확대돼, 관련 우리나라 부품소재 및 유관 품목들로의 수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양국 간 무역도 2020년까지 700억 달러로 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활용전략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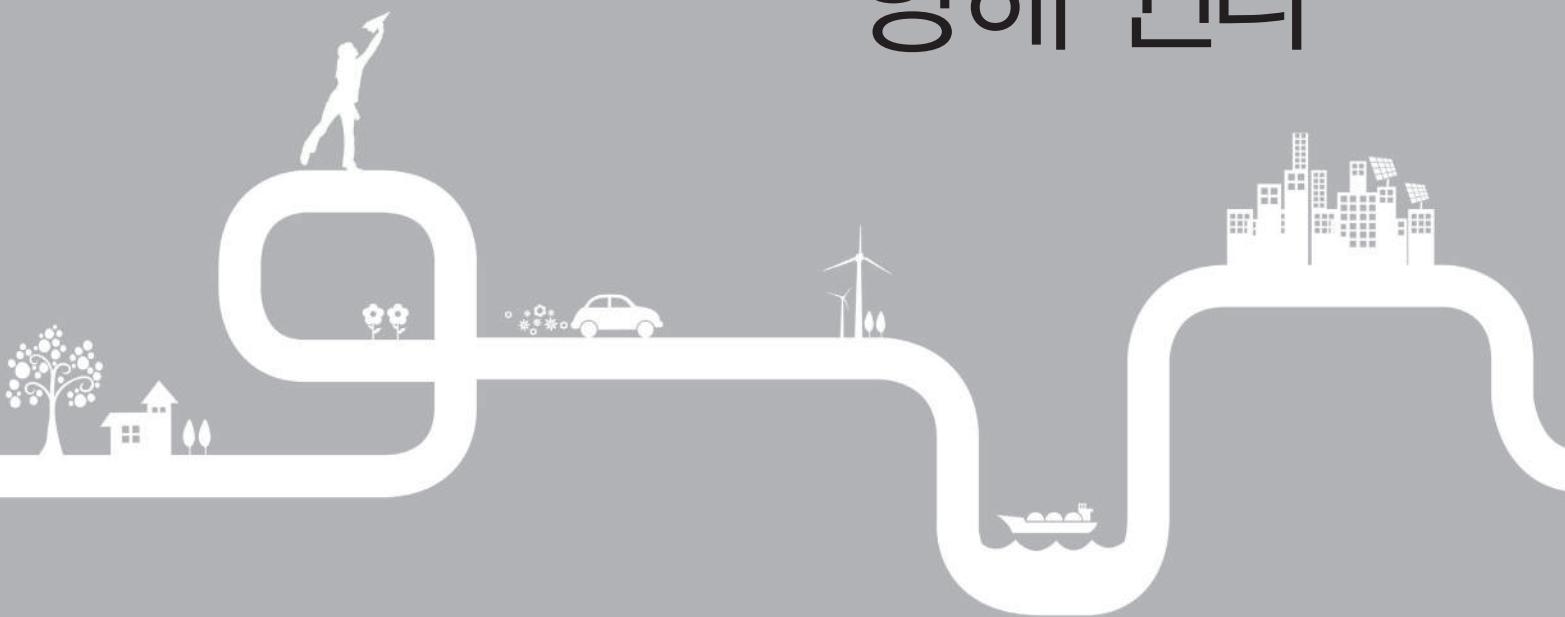
- 현장탐방: 중국인증심사 전문 CCIC 코리아

- 2014년 대중 수출품 분석 및 대응방안



COVER STORY

한·중 FTA를 향해 뛴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근 많이 언급되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개념이나 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 지난 5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이 세미나는 일대일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활용전략 세미나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꿈... 중국과 인접국 모두 원·원 정책 추구



※본 내용은 본 세미나 중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개요'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란 무엇인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일대일로란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한 말로, 현대판 실크로드 개념은 이미 2013년부터 언급된 개념들이다. '일대일로'란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14년 4월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로, 리커창 총리는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강조했다. 일대(一帶)는 '시안-우루무치-중앙아시아-이스탄불-뒤스부르크'에 이르는 육상 실크로드를, 일로(一路)는 '취안저우(泉州)-광저우-싱가포르-방글라데시-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홍해-지중해'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다(지도 참조). 일대일로 정책은 올해 3월 28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비전 및 행동'을 발표하며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일대일로의 실체는 중국 내륙 변경지역 개방 확대의 방향으로서 동부·중부·서부를 연결하고 남북을 잇는 경제회랑을 형성하며, 인접 국가 및 지역간 인프라 건설 가속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정책은 몇몇 브레인이 구상한 기획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묶어 대외적으로 통용되기 쉬운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미 서부대개발, 범북부만개발계획, 동북진흥전략과 같은 과거의 지역 육성 전략에 중국 내륙과 인접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존재했었다.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아시아 각지에서 통상적인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것들이 일대일로의 기반이자 실체로 볼 수 있다.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 배경

일대일로 추진 배경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낙후지역 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소수민족 안정화 정책 △자원확보 전략을 들 수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역내 경제 개발 주도권 확보 △대외 유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 서부 지역은 외부와의 인접성이 떨어지고 인구도 적어서 자체적 성장 동력이 부족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고속철·고속도로·공항·교량·송배전망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다른 부문을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동반하는 좋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는 소수민족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적으로 보면 중국은 동북아·동남아·중앙아·서남아에 걸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 및 경제통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 주변국들과

중국 육상·해상 신실크로드 '일대일로' 추진계획

자료: 한국무역협회



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기보다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자국 발전 전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일대일로'란 이름으로 표현된 것도 이미 진행 중인 타 프로젝트를 다 담으면서도, '인접국 전략' '중앙아시아 협력 전략'과 달리 주변국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실크로드'란 이름은 중국이 주인공이 아니라 참여국 전체가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주고, 역외 국가들이 느끼기에도 거부감이 적다.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의 이익과 인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므로 앞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과감한 물류, 에너지 투자는 역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작용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서방 국가들과 일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자국의 안정과 한반도의 안정이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한반도의 급변을 원치 않으며, 동북삼성 지역 발전을 위해 두만강 하구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이 이런 지리적 인접성은 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니지 못한 장점이므로 한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철도건설과 관련해 신실크로드와 남북철도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 ODA(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한국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이나, 대외홍보 차원에서 의료분야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한반도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 유럽으로까지 물류·운송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어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실크로드 투자로 파생될 건설 및 조달 수요를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되, 실크로드 건설에 직접 참여할 수 없더라도 뒤따르는 후속 비즈니스 기회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현장탐방: 중국인증심사 전문 CCIC 코리아 까다로운 중국 인증, 한국에서 해결하세요



CCIC 코리아(중국검험인증집단한국유한공사)는
중국 인증·검사·시험 기관인 CCIC의
국내 법인으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검사·시험을 수행해 국내 기업이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권한을 독점으로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서울 상암동 KGIT빌딩에 자리한
CCIC 코리아를 찾았다.

CCIC(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중국검험인증집단)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중국인증인가위원회(CNCA), 중국합격평정인가위원회(CNAS)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중국 내 최대 '인증·검사·시험' 기관이다. CCIC 코리아는 중국 CCIC그룹의 한국법인이며, 동시에 CCC 및 CQC 인증기관인 중국질량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의 한국 지사로 국내 CCC 및 CQC 인증 공장 심사 독점권을 갖고 있다.

현재 2,000여 개 한국기업에 인증·검사·감정 및 수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중국 수출 확대와 애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CQC 한국지사가 설립된 이후, 2007년 중국에서 CCIC그룹과 CQC가 합병되며 2008년 한국 내 법인도 CCIC 코리아로 사명이 변경됐다.

CCIC 코리아는 65명(서울 40명, 부산 15명)의 전문가가 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검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CCIC 코리아 백미라 본부장이 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국 인증 팁 5

1.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라

사전지식 없이 순조로운 인증 진행이란 있을 수 없다. 인증 대상, 절차, 표준, 제출 서류 등 해당 인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실제 인증 진행 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곧 인증 획득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 신뢰할 수 있는 인증대행기관을 선택하라

인증을 순조롭게 빠른 기간 내 획득하는 것은 대행기관의 업무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국 현지 컨설팅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통이 쉽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업무 처리가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인증기관의 한국지사를 통해 안전하게 인증을 획득하거나, 인증 진행 경험이 풍부한 신뢰도 높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인증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인증 획득 비용부담이 크다.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인증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인증할인클럽 제도를 통해 회원사에 인증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CCIC 코리아는 한국무역협회 협력 기관으로 인증대행비의 10%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인증담당자를 지정하라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인증 진행 시 모든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신청 기업은 인증 위탁 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인증 대행기관은 어떻게든 스스로 처리하고자 잘못된 정보들을 기재해 시험소 및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가능하면 기업 내 인증 담당자를 지정해 모든 절차를 파악하고 꾸준히 인증기관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변화하는 중국인증시장을 파악하라

모든 인증이 그려하듯 중국 인증 시장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인증 제품부터 제품규격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국 기업들은 초창기 중국인증 요구에만 물들어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

CCIC 코리아(www.ccickorea.com)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21층
CCC/CQC 전기·전자 제품: 02-6393-5860
CCC/CQC 자동차·완구·도료 제품: 02-6393-5840
중국 화장품·식품 라벨 인허가: 02-6393-5867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대한통운빌딩 604호
051-468-9839/9859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국의 대중 수출이 3년째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둔화세가 고착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사업단이 발표한 '부진 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 2014년 가공단계별·품목별 수출성과'는 최근 대중 수출의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 상태에서의 중국수출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2014년 대중 수출품 분석 및 대응방안

중국 최종재·소비재 수입 수요 커져… 한·중 FTA 활용 수출 확대 나서야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란 2014년 중반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중성장 기조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최근 가공무역 억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독자적 기술 및 브랜드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고기술제품 및 소비재 수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고속성장에 따른 소비수준 향상으로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8%에서 2013년 12.1%, 2014년 10.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소비재 수입 확대…한국, 중간재 비중 높아

기존 방식에서 대중 수출품목은 '최종재, 중간재, 1차산품'의 3단계로 구분됐지만, '부진 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 2014년 가공단계별·품목별 수출성과' 보고서는 최종재를 '소비재, 자본재'로, 중간재를 '반제품, 부품·부분품'으로 세분화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간재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세부 분야 간 비중은 변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둔화로 반제품의 비중은 줄고, IT·전자제품 등 부품·부분품의 비중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對)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대(對)세계 중간재 수입 비중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중국 해관이 집계한 2014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75.7%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대세계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51.7%로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격차가 큰 이유는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 비해 대세계 수입에서 소비재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2014년 상반기 3.1%에 머문 반면, 대세계에서의 비중은 10.6%에 이른다.

품목별 수출 성과를 보면, 소비재의 경우 중국 내 소비수준 향상으로 고급 위생·웨딩 제품, 화장품, 의류·패션 품목의 수출 성과가 양호했다. 중간재의 경우 고기술 품목의 수출이 양호했는데, 전자·기계류는 메모리, 첨단 디스플레이, 기어박스, 운전박스,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등 고기술 분야와 전자, 자동차부품의 수출실적이 좋았다. 반제품의 경우는 전반적 수출 부진 속에서도 냉연·도금·스테인리스 강판, 윤활유 등 고기술분야 중간제품이 양호한 수출 성과를 이뤘다. 한편 중국의 고속철도·환경분야 투자에 힘입어 철도·환경 관련 품목 수출이 양호했다.



최종재 및 소비재는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이자 한·중 FTA 관세철폐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대중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 모습.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품목으로 수출대체 필요

이와 같은 중국의 수입구조 및 수요 변화를 감안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의 대세계 소비재 수입과 우리의 소비재 수출 품목을 대조해 수출 확대 가능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내구소비재, 식음료, 승용차 등 중국의 수입과 우리의 대중 수출 간에 격차가 있는 분야의 수출 확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부품·부분품의 경우 현재 양호한 대중수출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주요 업종의 글로벌 경쟁구도 및 벨류체인 변화를 감안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분야의 동아시아 지역 가치사슬 재구성을 통한 비용 및 제품 경쟁력 제고와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본재의 경우 기술재편 및 산업구조 재편 추이를 감안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례로, 대표적인 자본재 품목 중 하나인 LCD의 OLED 전환 등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재편을 고려한 수출대체가 필요하다.

반제품의 경우 석유, 석유화학 등 주요 반제품 분야 중국의 수입대체 및 국제 원자재(원유) 가격 하락 추세의 불가피함을 직시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한·중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품목의 한국 내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종재 및 소비재는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이자 한·중 FTA 관세철폐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대중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은 최종재 및 소비재의 수입관세가 높으나, 한·중 FTA에서 이 분야의 대폭적인 관세철폐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고관세로 인해 수출이 되지 않던 제품의 수출산업화를 모색하고, 기존 중간재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하던 품목을 최종제품 수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기회로 삼아 수출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

한편 관세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글로벌 벨류체인에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은 중간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연구개발(R&D)-생산-공급' 네트워크 최적화에 노력해야 한다. IT·전자, 섬유·의류 등 글로벌 분야가 고도화된 분야는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 통관·무역원활화, 투자자유화 사항을 적극 활용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공업 반제품 분야는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국내생산과 중국 현지생산의 재배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2014년 대중 수출 증가 품목

구분	스타풀목(수출 양호 품목)	주력품목(수출 비중이 큰 품목)
최종재	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세탁기, 진공청소기, 보청기, 수동조리기구, 치과용 X선기기, 냉장고, 믹서·녹즙기, 내비게이션, 오븐·쿠커(밥통) 면제 편물의류, 피혁신발, 면제 남성자켓, 트렁크·수트 케이스, 화장용 분첩·케이스, 여성블라우스·셔츠, 철강제 식탁·부엌용품, 펠트제의류, 송수신기기, 남성셔츠 스타킹, 살균제, 목욕제품, 광택제, 화장품, 화장비누, 피부용 계면활성제, 가정용 종이제품, 리튬일차전지, 면도·탈취, 목욕용품, 조제연마제품, 살포
	식음료	의자 부문품, 믹서녹즙기, 냉장고, 내비게이션, 안테나, 양탄자·깔개
	승용차·소비용 운송장비	소형 전기제어·배전반, 플라스틱제품, 전기램프·조명기구, 신발용 갑피, 기타 신발류 부문품
	산업용 운송장비	프리즘·렌즈, 화장품, 위생타월·タ월, 살충제, 살균제, 접착제
	자본재 (운송장비 제외)	당류, 비스킷·베이커리, 유아용조제식품, 기타조제식품, 김미음료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준설선, 중형 디젤승용차, 모터싸이클, 자전거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중형 가솔린승용차, 중형디젤승용차, 대형 가솔린승용차
	부품·부분품 (운송장비 제외)	탱커, 화물선·화객선, 항공기부분품, 기타 차량
중간재	운송장비용 부품·부분품	항공기, 어선·어획물 가공용 선박, 기타 차량, 엔진 갖춘 새시, 항공기 부분품, 기타 특수차량
	1차산품	광섬유·성형제조기, 종류기·정류기, 기타 엔진, 음료가열기, 평면연삭기, 측정·검사기, 회전·주행계, 훈합기·반죽기, 액체축정기, 용기 세정·건조기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LCD, 음향·신호기 부문품, 기타전기기기, 기억장치, 송수신기기
	기타 부품·부분품 (운송장비 제외)	파라크실렌, 스티렌, 프로펜, 석유아스팔트, 에틸렌
원자재	기타 원자재	액화 프로판, 기타 조제윤활유, 부탄(액화) (※석유제품 수출은 부진)
	기타 부품·부분품 (운송장비 제외)	석유제품(제트유, 경유),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액화 프로판활유

※ '스타풀목'은 각 가공단계 및 분야 내 수출 품목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량을 기록한 품목 중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

자료: KOTRA

카툰 안종만

FTA로 베트남 시장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늦었지만 통상교섭실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상교섭실장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기능을 이관 받아 통상에 관한 조약·협정 관련 업무 및 양자 통상교섭, 구체적으로는 FTA 협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실장은 장관을 보좌하며 국내적으로 FTA를 비롯한 통상 조약·협정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협상 진행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는 각종 통상조약과 FTA 협상에서 수석 대표를 역임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실장 직전에는 FTA정책관으로서 새로운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한·베트남 FTA 수석대표로서 한·베트남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신규 정책을 수립하거나 FTA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리적 방안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통상은 상대방이 있는 교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의 FTA 전략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미국·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단기간에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세계 10대 무역국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보, 투자 유치, 제도 선진화, 구조조정 가속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FTA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 비중이 전체 경제성장률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TA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체 성장을 끌어올린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김학도 실장 약력

- 1962년 출생
- 1985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 2004년 미국 USC(Univ. of Southern California) 정치경제학 박사
- 1988년 상공부 입부(제31회 행정고시 합격)
- 2004년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장
- 2010년 지식경제부 대변인
- 2012년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현)

입니다. 교역 측면에서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이 2.4%였는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7.1%에 달했던 반면 FTA 비체결국과의 수출증가율은 -0.6%에 불과해, FTA가 수출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FTA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 29일 '新(신)FTA 추진전략'을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FTA 정책의 새로운 2막을 개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을 위한 유망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체결 FTA를 토대로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inchpin) 역할을 수행하고,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해 TPP·RCEP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세안·인도 등 활용도 및 예측 가능성이 낮은 FTA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정을 개정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 여지가 큰 신흥국으로의 새로운 FTA를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단기적으로는 공동연구가 종료된 중남미 또는 중동 지역 국가 등을 대상으로 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 FTA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해 FTA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들 및 국민들에게 당부 혹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정부의 역할은 FTA 협상을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보장하는 등 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장(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FTA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성장 사다리로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FTA 콜센터 1380', 원산지 맞춤형 컨설팅 등 FTA 활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실시 중이며,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차이나데스크' 설치(3월 11일), 업계 대상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 등 기업이 FTA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의 초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을 비롯해 지난해 타결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필요 시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해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 등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FTA로 인해 낮아진 관세장벽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송승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월 18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 개정을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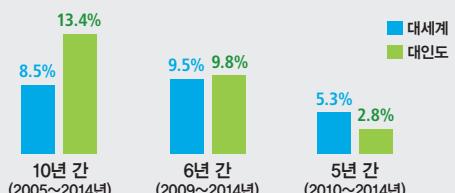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동향 및 시사점

CEPA 효과 반감... 적극적 개정 나설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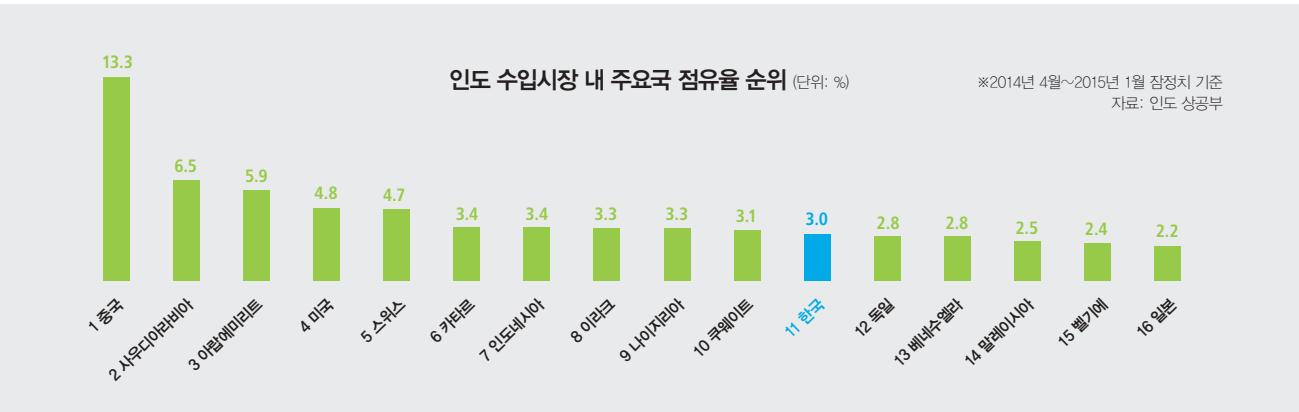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대(對)세계 수출보다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10년 1월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의 속도는 다소 낮아졌다. 인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쟁국인 일본과도 CEPA를 발효했고 이에 따라 우리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간 무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인도 CEPA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무역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4년 55억 달러에서 2014년 181억 달러로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출은 2004년 36억 달러에서 2014년 128억 달러로 연평균 13.4% 증가했다. 이는 대세계 연평균 수출증가율 8.5%를 상회한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현재까지도 좁혀서 보면, 대인도 수출은 대세계 수출과 큰 차이가 없다. 2009~2014년 6년간 연평균 대세계 수출증가율은 9.5%이며 대인도 수출증가율은 9.8%이다. 오히려 CEPA 발효 이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만 보면 대인도 수출증가율은 2.8%로 대세계 수출증가율 5.3%보다 낮다. 이는 한·인도 CEPA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개방률이 가장 낮은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및 대인도 수출증가율(연평균) 비교



지난 10년간 대인도 수출증가율은 대세계 증가율을 상회하지만, 한·인도 CEPA 이후 오히려 대세계 증가율보다 낮다. 한·인도 CEPA가 양국의 교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인도 CEPA 이후 수출증가율 주춤

인도는 우리나라의 9위 수출대상국이자 17위 수입대상국인 반면, 인도에게 있어 우리나라는 11위 수입대상국이자 21위 수출대상국이다.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12위), 베네수엘라(13위), 말레이시아(14위), 벨기에(15위), 일본(16위) 등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이들 중 말레이시아(2011년 7월 발효), 일본(2011년 8월 발효)과 각각 FTA를 발효한 상태이며 EU와는 협상 중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도와 각각 CEPA를 체결해 인도 수입시장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한·인도 CEPA가 일·인도 CEPA에 비해 7개월 앞서 발효됐으나 일·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수준은 90%로 한·인도 CEPA의 개방수준인 85%보다 높다. 반면, 즉시 철폐비율에 있어서는 한·인도 CEPA 가 38.4%로 일·인도 CEPA의 7.6%에 비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개방수준은 한·인도 CEPA가 일·인도 CEPA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개방속도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수출 상위 50개 품목의 인도 수입통계를 볼 때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한·인도 CEPA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드러났다. 냉연강판, 전자관련제품, 쟈Scar 앤도강판, 용융아연도강판 등에 대해서는 한·인도 CEPA로 인해 우리 제품이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출 역시 늘어났다. 시장점유율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는 동일 품목에 대해 약 1.7~4.8%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14년 1~7월까지 인도측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대한수입 상위 50개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1.8%인 반면, 동일 품목에 대한 일본의 점유율은 4.6%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일·인도 CEPA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품목들은 일본에 비해 불리한 것이 발견됐다. 전기발전 설비, 산업용플랜트 기계 등에 대해서는 일·인도 CEPA에 비해 한·인도 CEPA의 양허세율이 높은 상황이다. 즉, 한·인도 CEPA

에서 협상제외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는 10%의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일·인도 CEPA에서는 10년에 걸쳐 철폐되도록 돼 있어 현재 일본제품은 4.8%를 적용 받고 있다.

2010년 1~7월 수입 통계기준으로 3위 품목이었던 전기발전설비(HS 98100013)는 한·인도 CEPA에서는 협상제외품목으로 분류돼 현재 여타국가로부터의 수입품들과 마찬가지로 10%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는 중이며 2014년 1~7월 수입통계기준으로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10.2%로 감소하면서 8위로 밀려났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품목은 일·인도 CEPA로 양하돼 현재 4.8%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3% 늘어났다. 현재 우리제품의 수입 비중은 8.2%, 대일 수입은 4.9%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인도 CEPA보다 불리한 품목 양허 확대해야

최근 모디 총리가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 개정을 합의했다. 개정협상 시 협상제외품목들이 협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상제외품목인 HS98류에는 플랜트 기계 및 장비 품목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일·인도 CEPA에서는 양하된 품목들이다. 향후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도(Make in India)' 정책 추진에 따라 동 품목들의 대세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협상에서 빼 놓지 않고 다뤄야 할 것이다.

다만,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2014년 현재 75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만 접근할 경우 인도 정부가 한·인도 CEPA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농산물 등 인도측 관심 품목에 대한 추가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협상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글 이해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콜롬비아측 발효 준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한·콜롬비아 FTA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콜롬비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발효 앞둔 한·콜롬비아 FTA의 기대효과

콜롬비아 내 승용차·타이어 등 점유율 높일 기회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콜롬비아 측 발효 준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승용차, 타이어 등 우리 공산품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맺게 되어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을 제치고 콜롬비아 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 무역규모는 2014년 기준 20억 달러에 달한다. 한동안 주춤했던 콜롬비아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콜롬비아산 원유 수입이 급증하며 양국 무역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양국의 무역에서는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콜롬비아에 승용차,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등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로부터는 광물, 에너지 등 원자재와 농산물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

둘째,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콜롬비아 수출 중 상위 10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8.1%에 이른다. 게다가 우리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97.2%에 달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콜롬비아측 일반관세율 낮아져도 FTA 이익 보장 확보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현재 교역증인 품목 대부분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 철폐된다. 콜롬비아의 경우 발효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6.7%, 수입액 기준으로 97.8%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발효 5년 이내에는 품목수 기준 82.5%, 수입액 기준 55.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효 5년 내 품목수 기준 90.3%, 수입액 기준으로 99.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언뜻 보면 콜롬비아측의

한·콜롬비아 FTA 전체 품목 양하수준 비교

양하단계	한국측				콜롬비아측			
	품목수(개)	비중(%)	수입액(달러)	비중(%)	품목수(개)	비중(%)	수입액(달러)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85,786,333	66.91	4,390	60.64	283,528,285	34.08
5년내 철폐	10,725	90.27	126,891,057	98.96	5,969	82.46	461,272,479	55.45
10년내 철폐	11,419	96.11	128,189,388	99.98	7,003	96.73	813,598,664	97.80

*주-①품목수: 한국측은 HSK 2010 10단위 기준, 콜롬비아측은 HTSC 2007 10단위 기준(단, 농산물은 8단위) ②수입액: 2007~2009년 3개년 평균 ③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은 별도 표시 없이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5년 내 관세철폐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징과 콜롬비아 국내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최대 수출품은 승용차로,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콜롬비아측에서는 승용차 산업에 민감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양국이 10년 철폐에 합의한 것이다. 승용차 부문을 제외하면 콜롬비아 측의 개방수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여타 FTA와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일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MFN 세율(WTO 회원국 대상 세율)이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특례 관세율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의 FTA 협상은 2009년 12월 개시되었고, 이때는 2010년 1월 1일의 MFN 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2010년 11월 MFN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결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 상품에 적용되는 FTA 특례관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아져 FTA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양국은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FTA 특례관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는 MFN 세율보다 0.5% 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평판압연제품(HS 7210709000)은 기준세율이 10%이고 5년 철폐 시, 해마다 2%씩 관세가 인하¹⁾된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동 제품에 대한 MFN 관세를 이미 5%로 인하했기 때문에, 원래 협상안대로라면

발효 1년차(8%)와 2년차(6%)의 FTA 특례세율이 MFN 세율(5%)보다 높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발효 1~2년차에는 MFN보다 0.5% 포인트 낮은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승용차, 35%인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점유율 증가 기대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용차 부문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콜롬비아는 현재 승용차에 대해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FTA를 통해 매년 3.5%씩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산 승용차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 승용차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승용차의 점유율은 2011년 17.8%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13.1%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미국산과 독일산 승용차의 점유율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국과 EU가 각각 2012년, 2013년에 차례로 콜롬비아와의 FTA를 발효한 데 따른 결과다. 이미 미국과 EU는 관세인하가 시작됐으므로 우리나라가 FTA를 조기에 발효해야만 이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아직 콜롬비아와의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어 일본산 대비 한국산 승용차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타이어 역시 관세 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의 타이어 수입시장에서는 상위 5개 수출국²⁾ 중 브라질만이 유일하게 콜롬비아와 FTA를 발효했는데,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FTA를 발효할 경우 일본, 태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진다. 특히 여러 타이어 제품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력수출품은 5년 내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³⁾

1) 8%(발효 1년차) → 6%(발효 2년차) → 4%(발효 3년차) → 2%(발효 4년차) → 0%(발효 5년차)

2) 2014년 기준 타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중국(21.4%), 일본(17.8%), 브라질(12.8%), 한국(11.2%), 태국(5.8%)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지상중계: FTA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

일목요연한 자료로 상대국 세관의 의구심을 해소하라

FTA 활용 기업이 늘어날수록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한다. 그러나 미리 대비를 해놓고 있다면 사후검증은 공포의 대상만은 아니다. 지난 5월 20~21일 코엑스에서 열린 'FTA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는 사후검증의 최근 동향과 진화된 대응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를 간 열린 세미나 중 둘째 날 심화과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사후검증 원산지 불충족업체 수

자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2014년은 1~10월 수치임.



이 세미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에서 직접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신승원·유영웅·민경원 관세사가 직접 진행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사후검증 이슈가 제기되기 전부터 사후검증지원실을 통해 꾸준히 사후검증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지금은 국내 대부분의 사후검증 상담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로 몰리다 보니 가장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유일한 지원기관이 됐다.

사후검증 최신 동향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파악한 사후검증 대응 실패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5건, 2012년 28건, 2013년 44건, 2014년(1~10월) 66건으로 늘어났다.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사후검증 관련 이슈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검증 원산지 불충족 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FTA 활용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후검증 대처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은 최근 사례 3개를 소개해 보겠다.

사례1. 제출기한 경과

PVC 비닐과 면사를 수입해 자동차 시트커버를 생산해 수출하는 A사는 2014년 8월 미국 롱비치 세관으로부터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라는 CBP Form 28(사후검증 시 미국 세관이

최초로 통보하는 자료 요청서)을 수령했다. 그러나 수출업체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제출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CBP Form 28에서 요청한 서류제출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인정받지 못해 관세추징, 과태료, 벌금, FTA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사례2. 원산지확인서의 무분별한 발급

전자 금형 설비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인 B사는 모기업 및 수출업체에서 요청한 원산지확인서를 서명·발급했다. 그러나 근거서류를 보관·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1년 동안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것 이었다. B사의 공급품목이 한·EU FTA의 검증대상이 되면서 근거 없이 발급한 수백 건의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고, 모기업 및 수출기업은 과태료, 벌금, FTA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사례3.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자동화 이동설비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C사는 수출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세변변경기준으로 판정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미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입증하라는 요청이 있어 품목분류 적합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했어야 했지만, 자료(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품목분류 근거대장 등)를 영문으로 작성하지 못해 제출기한을 경과했다. 그 결과,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 인정을 받지 못해 관세추징, 과태료, 벌금, FTA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또한 미국 수입자와의 거래가 단절됐다.

사후검증 대응 시 주의점

사후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세미나와 자료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선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했다.

1. 직접운송을 입증하라

FTA는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상 운송은 지역별 거점을 물류허브로 이용해 움직인다. 싱가포르에 대규모 물류허브가 있어 한·미 간 물류가 싱가포르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와 같은 제3국 통과나 환적 시 실질적인 가공작업 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고, 경유지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서류로 이를 입증하면 FTA 적용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세관은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해주고 있다.

2. 자료 간의 논리를 일치시켜라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부하가 보고서를 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경우엔 다시 써 오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세관 담당자도 제출한 입증서류가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재차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각 서류들 간의 품명을 일치시키는 등 막히는 부분 없이 이해가 간다면 세관 담당자의 의구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서류들은 영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돼야 한다.

3. 사후검증의 '꼴판왕' 한·미 FTA

한국이 맺은 FTA 중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에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발급기관이 형식상의 오류를 제거하게 된다. 한·EU FTA의 경우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절차가 있어 이 또한 사전검증의 효과가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납세신고서(Entry Summary—CBP Form 7501)에 간단히 'KR' 글자만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후검증 리스크가 큰 편이다. 따라서 한·미 FTA 사후검증만 잘 대비한다면 대부분의 FTA는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입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한·미 FTA는 납세신고서에 간단히 'KR'만 적으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수입자가 수출자와 상의 없이 FTA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후검증 시 수입자가 다짜고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입증서류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수입자와 FTA 적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번 사후검증에 적발될 경우 수출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요주의 대상이 되어 다른 수입자와의 거래 시 지속적인 사후검증 요청 가능성성이 커진다. ☐

글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자유무역의 역사: ⑦정부조달협정(GPA)

WTO GPA에 15개국 가입... 중국 등 참여 희망

세계 각국 정부가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조달 시장은 그동안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정부조달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1979년 개최된 도쿄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 무역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체결됐다. 즉,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정부조달제도나 관행을 완화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돼 제한적이 나마 정부조달 부문이 국제경쟁에 노출됐다. 그런데 이 협정은 모든 GATT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또한 적용범위도 개방국 중앙정부의 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 물품 조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후 1986년부터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채택됐고, 우리나라 1994년 6월 이에 가입했다. WTO GPA는 적용대상 기관을 기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기관과 공기업 등 여타 기관으로 확대하고,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건설서비스도 개방범위에 새로 추가켰다. 기존 GPA는 양허하한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며, 물품의 경우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원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분야만 개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자국 GDP의 약 1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각국은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브라질 의약품 정부조달 진출 상담회' 모습.(참고로 브라질은 WTO GPA 회원국은 아님)



1979년 첫 GPA 체결로 정부조달 개방돼

정부조달 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WTO GPA는 외국의 공급자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무차별대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입찰절차, 공급자 자격심사, 낙찰자 선정, 정보공개, 분쟁해결 절차 등과 관련한 의무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당초 WTO GPA에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협정 내용을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한다”는 조항(GPA 제24조 7항)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1997년부터 개정 협상이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협정 적용범위의 확대’, ‘차별적 조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 내용의 개선’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GPA 참여국을 확대하고,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조달 시장의 변화를 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2012년 3월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 GPA가 채택됐고, 전체 회원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자국 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수락서를 기탁해 2014년 4월 개정 GPA가 발효됐다.¹⁾ GPA 회원국은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아르메니아이다. 이 중 GPA의 비준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대만, 홍콩, 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일본, 아루바, 스위스, 아르메니아)은 아직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아 1994년에 체결된 기존 정부조달협정이 계속 적용된다.

2014년 개정 GPA 발효…10개국 적용

개정 GPA는 전자조달 등 조달 관련 기술발전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조달절차나 양허변경 절차, 개발도상국 우대조항 등을 명확하게 했고, 양허 하한선을 인하해 양허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조달할 때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GPA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일각에서는 개정 GPA가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측 보도자료에 따르면,²⁾ 철도 운영부문은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 관리와 장비조달만 포함된다. 국가안보 관련 조달은 개정 GPA에서도 여전히 예외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개정 GPA에서 건설장비 임대서비스를 추가로 양허했고 학교 급식용 농산물 구매 시 협정 적용 배제를 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개정 GPA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연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등의 국가들이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의 세계적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GPA를 통한 무역기회 창출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며, 조달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 절감과 국민편익 증대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³⁾

1)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2/3의 비준이 필요하다.
2)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합동 보도자료(2013년 11월 27일)

미국·중국·EU의 중동 FTA 전략과 시사점 ‘석유경제’서 ‘지식경제’로 탈바꿈… ‘걸프만의 기적’ 파트너로 한국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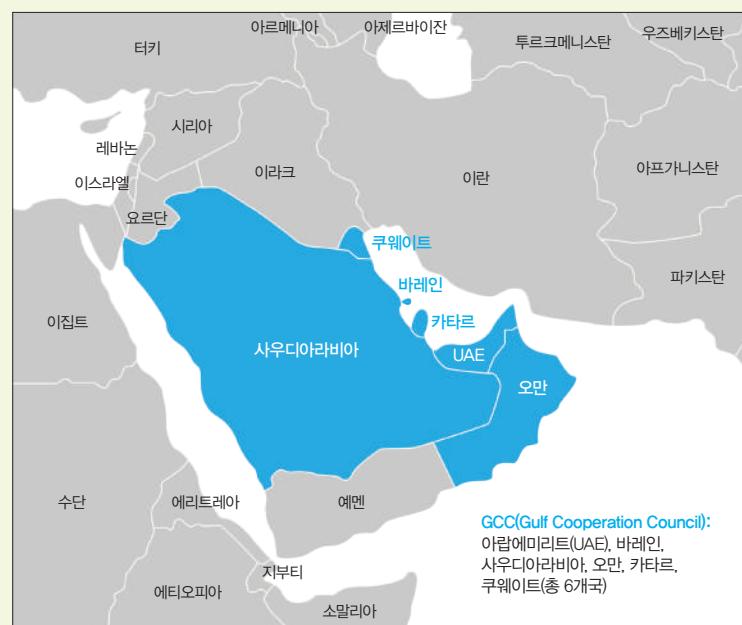
중동은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진 건조지역이지만, 세계 전체 원유 생산량의 35%를 담당하고 있으며,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의 70%에 달하는 지구촌 에너지공급소다.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이 20%에 불과해 경제동력과 신(新)산업육성에서 많은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정치적·군사적 불안감과 종교적 갈등, 정국 혼란은 여전한 난제지만 최근 탈(脫)오일정책과 더불어 지식경제로 정책노선을 정하는 등 향후 FTA를 활용할 기회가 무궁무진한 무대임은 분명하다.

중동(Middle East, 中東)은 유럽의 관점에서 본 극동(極東)과 비교해 보다 그들과 가까운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공식적으로 중동은 아랍연맹(the League of Arab States 또는 Arab League)으로 연합된 22개국¹⁾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와 이스라엘 등의 비(非)아랍국가들을 일컫는다. 이들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15개국²⁾만이 현재 WTO 회원국이다. 특히 예멘은 회원국 중 가장

최근 WTO에 가입했다.

대부분 석유와 석유관련 제품에 기반한 교역이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광사업의 호황 역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와 같은 부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같은 극빈국이 공존하는 등 빈부격차가 큰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GCC 및 중동 주요국의 지리적 개요



미국 개방경제 확대와 정치·군사동맹 강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2015년 5월 현재 총 20개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중 무려 5개국이 중동국가(모로코·바레인·오만·요르단·이스라엘)와의 협정이다. 위 국가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교역비대칭이 심각함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FTA 자체를 순수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외교·군사의 복합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이라면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정치·외교적 목적의 일환으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 상대 국가의 경제발전과 미국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스라엘, 요르단과의 FTA가 그 대표적 예다. 정리하면, 미국은 중동국가와의 FTA를 선정할 때 경제적 이익의 측면보다는 외교안보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해당 국가와의 군사동맹관계, 그리고 미국식 개방경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국 정치·외교적 관계보다 경제적 실리 추구

중국은 정치·외교적 의의보다 자유무역 자체의 기본에 충실한 경제적 메리트를 높이 사고 있다. 중국은 아직 중동국가와 FTA를 맺은 사례는 없으나, GCC 6개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22개 아랍연맹 국가들과의 교역 중 90%가 이들 6개국과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이들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1년 90억 달러에서 2012년 1,510억 달러로 약 17배 급성장했다.

그 사이 에너지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던 수준이 최근 들어 금융협력 및 인적자원의 교류로도 활발해졌다. 한국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국별 교역규모에서 GCC는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독일에 이은 7위권 교역상대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중동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주춤하는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개선하려는 경제적 실익에 근거하며, 중동과의 FTA를 통해 제 2의 실크로드를 재현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U 정치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쫓기

EU의 경우는 이미 레바논, 모로코,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과 FTA를 체결했고 리비아 와도 협상이 진행 중으로 주요 3대 경제권 중에선 가장 왕성한 중동과의 FTA를 자랑한다. 그 추진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다. EU는 중동국가와의 FTA를 통해 그간 미국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동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증진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EU 중심의 새로운 역내 다자간협력체제를 모색코자 한다.

특히 그간 유럽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했던 ‘이슬람 원리주의(Islamic Fundamentalism)’에 대한 EU의 정치적 영향력을 FTA를 통해 확대시키고자 한다. 경제적인 기대감도 결코 낮지 않다. 중동에 EU의 서비스산업 수출을 증가시키길 원하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고 있다.



한국 모래바람을 기회의 바람으로

한국은 그동안 경제적인 안목으로 FTA를 추진해온 계

주요 3대 경제권 국가의 중동지역 FTA 네트워크 현황과 전략적 의의

	체결국 현황	전략적 의의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오만 •UAE와 협상 중	•경제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 •군사동맹관계 강화 •미국식 개방경제 및 민주화 확산 •미국시장 개방으로 경제발전 유도
중국	•GCC와 협상 중	•경제적 실익에 근거 •경제성장 재점화 •중국제품 점유율 상승 기대
EU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와 협상 중	•에너지 및 정치안보의 안정성 •미국과의 균형잡인 역내 영향력 행사 •경제적 기대감

사실이다. 이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이전 FTA 시대 제 2막을 준비할 때이고, 포스트 오일시대를 선언한 중동은 아프리카 및 중남미와 더불어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들은 다음 FTA 상대국으로 GCC를 제일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세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부상하며 유가 하락은 현실화됐고, 이에 중동국가들도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동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수출전략을 재정비하고 일본, 중국, EU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기본이고 향후 중동의 발전열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한강의 기적’을 꼭 닮은 ‘걸프만의 기적’을 기대하는 중동에게도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본보기다. 박 대통령이 최근 순방한 4개국은 모두 GCC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 때 체결한 양해각서를 근간으로 지금의 흐름을 이어 2009년 중단된 GCC와의 FTA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들도 지난 70년대 우리와의 하드웨어 협력(인프라건설 및 에너지 분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협력(정보통신기술, 교육, 의료 분야)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중동발 모래바람이 순풍에서 역풍으로 변할 수 있다.❷

1)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2)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예멘,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이상 가나다 순)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①무역 그리고 지식재산권

사전적 대응 못하면 사후적 보호 불가능...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게 돼



지식재산권은 무역장벽을 넘어 손쉽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선행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갖는 불안정성과 일반적인 무역업태에 따른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중국의 경제 환경의 변화 및 한·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치밀한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이 필요하다.

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무역자유화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분야 중 자유화 정도를 비교한다면 가장 높은 것은 어느 분야가 될까? 각 국가별 차이 및 구체적인 무역의 내용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 지식재산권 분야는 가장 높은 자유화도가 이미 달성된 분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WTO 체제가 1995년에 비로소 마련됐다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년) 및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은 훨씬 전부터 지식재산권의 내국민대우를 인정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관한 실질적인 무역 장벽을 제거했다.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타국의 국민도 자국 국민과 동일하게 해당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법적 효과는 그 침해에 대한 금지구 및 손해배상청구인데, 이는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으로 타인의 진입을 배제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일정한 절차를 밟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다른 무역 분야인 상품·서비스·투자에서 지식재산권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의 정도로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시장에 대한 접근조차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불안정성과 어려움

지식재산권은 그 자체의 태생적인 불안정성과 더불어 일반적인 무역 형태에 따라 그 확보가 쉽지 않다. 지식재산권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권리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해당 권리의 유효성 여부가 사후적으로 다퉁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해당 권리의 유·무효를 달리 판단할 수 있어, 한 국가에서의 권리 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한편 일부 지식재산권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각 개별 국가마다 권리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데, 각 개별 국가마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며, 보통 무역을 하려는 상품·서비스는 대체로 한 국가에 이미 공개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국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무역 관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다국적인 지식재산권의 이용관계가 얹혀 있는 경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 전략으로서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경영 리스크를 일부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와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없다. 모든 지식재산권은 그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경영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 전략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은 경쟁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서비스의 차별화, 침해 상대

방과의 협상적 우위, 가격경쟁력 확보, 시장진입 환경조성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영 문제의 해결에 조력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법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을 때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불안정성과 한계를 회피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한·중 지식재산권 전략

무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은 양 국가의 경제 상황 및 해당 무역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권리 내용으로 획득한 각 국가별 지식재산권들 사이에서도 해당 국가의 내수시장 규모에 따라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욱 큰 가치를 갖는 해당 국가의 특허권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또한 한·중 가공무역 방식으로 제조된 생산품은 중국 국외로 전량 수출하므로, 중국 내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소비자 구매력 상승 및 내수 부양 정책에 따라 가공무역 방식이 아닌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직접 수출 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수출에 앞서 중국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체계는 공통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들의 영향으로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규정에서 많이 다르며 그 실무적인 절차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한·중 FTA 협정문의 지식재산권관련 조항들로 영향 받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파악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필요

지식재산권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통용될 수 없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모두 잃는 것이다. 처음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되지 못한 지식재산권은 사후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개돼 그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건 국익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국익 혹은 국부의 유출이 아닐까. 지식재산권은 무엇보다 우선적 확보와 사전적 대응이 매우 그리고 매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글 이민선 관세사(FTA무역종합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HS 품목분류상 액세서리는 신변장식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에서 정의하는 신변장식용품이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 예를 들어 반지, 팔찌,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시계용 체인, 펜던트 등을 의미한다.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⑬패션 액세서리(장신구)

한·미 FTA 수혜품목… 미국 수출 청신호

HS 품목분류상 액세서리는 신변장식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에서 정의하는 신변장식용품이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 예를 들어 반지, 팔찌,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시계용 체인, 펜던트 등과 일반적으로 주머니, 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해 사용하는 개인용품, 즉 시가나 월련케이스, 화장갑, 묵주 등을 의미한다.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은 HS7113호에 분류되며 이는 다시 금, 백금, 은 등 귀금속으로 만든 것과 이러한 귀금속을 입힌 것으로 4단위 이하가 세분화된다. 그 밖의 것은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서 HS7117호에 분류되는데 돌, 나무, 모조진주, 알루미늄, 플라스틱 사출물, 비금속제 및 유리제 구슬을 사용해 조립한 모조신변장식용품을 말한다. HS7117.19호에 이러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브로치, 반지 등이 분류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단추는 HS9606호에 분류되고 있으나,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의 소매 끝(Cuffs)을 단추 대신 연결시켜주는 액세서리인 커프링크스(Cuff-Links)는 소재에 따라 귀금속의 경우 HS7113호에, 그 밖의 경우는 HS7117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시계나 손목시계용 팔찌의 경우 역시 HS9101호(귀금속제의 휴대용 시계) 또는 HS9102호(기타의 휴대용시계)에 따로 분류되나, 이러한 휴대용 시계의 체인은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재질에 따라 HS7113호 또는 HS7117호에 분류된다.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으로서의 신변장식용품은 HS9706호에 분류된다.

금·은·백금 등으로 직접 제조하면 대부분 역내산 인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페루 FTA(HS 6단위변경기준)를 제외하고는 HS7113호 및 7117호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모두 HS 4단위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HS7106호~HS7112호에 해당하는 금, 은, 백금 등의 원재료를 가공해 제조된 주얼리는 원산지로 인정돼 FTA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제조한 주얼리나 반제품을 수입해 단순가공된 주얼리는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FTA 누적기준을 적용해 FTA 체결 상대국에서 제조된 부분품 등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제조한 경우라면 수입한 그 재료도 역내산 재료로 간주되므로 원산지가 인정돼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EU나 미국은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브랜드를 기반으로 세계 주얼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베트남 등 아세안과 최근 가서명된 중국 등은 중저가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액세서리, 그 중 패션 주얼리의 수요 증가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조 장신구의 품질과 디자인이 귀금속 못지않게 개발되면서 귀금속 대체 액세서리로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로 인해 패션 액세서리 구입 주기가 짧아져 구매 부담이 적은 이미테이션 제품이 높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의 액세서리 시장에서 한·미 FTA 발효로 한국산 액세서리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더 큰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례로, 반제품 주얼리를 미국에 수출하는 A사는 2000년대 초반 국내 인간비 상승에 따라 생산라인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옮겨 미국 수출 물량의 70%를 생산했다. 하지만 클레임이 자주 발생했다. 의사소통 부족과 현지 기술력 문제 등으로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액세서리류(주얼리)는 귀금속으로 만든 것은 HS7113호, 모조품은 HS7117호에 분류된다. 주얼리는 한·미 FTA의 관세인하 폭이 큰 수혜품목이다.

원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점에 한·미 FTA가 발효됐고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특히, 인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품질고도화와 함께 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한·미 FTA 발효로 5~7%의 관세 즉시 철폐)을 보고 생산라인을 다시 국내로 옮겨 수출확대를 이룬 것이다.

미국의 액세서리 수입업체 B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기존 거래처인 중국, 인도업체 대신 한국 업체를 신규로 발굴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 수입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다.

국내 수입관세 8%…200달러 이하 개별소비세 없어

모조 장식품 역시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경우 품질 및 독창적인 디자인 및 한·미 FTA에 따른 관세철폐에 힘입어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다. 패션 액세서리 제품으로 이미테이션 주얼리를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는 C사 역시 한·미 FTA에 따른 관세혜택으로 미국 바이어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C사의 이미테이션 주얼리 제품도 한·미 FTA 발효 이전 기존관세율이 11%였으나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수혜품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출뿐만 아니라, FTA에 의해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주얼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즉, 주얼리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8%이며 FTA가 체결돼 발효된 49개국으로부터 원산지 기준에 맞는 이들을 수입하면 무관세나 인하된 세율로 수입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원화로 기준가격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한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

글 유영진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실)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FTA 활용 노하우: 농산물의 FTA 활용하기

서류 간소화 & 특화 시스템으로 농산물 수출 '날개짓'

2014년 기준, 다른 산업의 FTA 활용률은 70%에 이르는 반면, 원산지증명이 까다로운 농수산식품의 FTA 활용률은 40% 정도로 매우 저조해,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는 농산물의 FTA 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관세청 등의 지원 및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3월부터 FTA 활용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다.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된다. 또한, 농수산식품 분야에 특화된 FTA-KOREA 및 FTA-PASS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편하게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류 간소화로 인력 부족한 농업 현실 반영

농산물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www.ftaagri.or.kr)은 대표품목의 표준BOM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작성방법의 이해를 돋우고, 주요 농수산품목의 HS코드 검색기능을 추가해 품목분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농가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이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완전생산기준이란 '어떤 물품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국가, 품목, 품종 등에 따라 생산 및 재배, 수확의 방법이 다양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국가별로 정하고 있는 인증의 성격과 인증을 획득하는 방법도 국가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서의 효력 인정범위 또한 다르므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절차 및 서류를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직접검증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국 검증 주체를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객관적인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구비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품종개발, 수확량 증가 및 관련 인증서 획득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이와 별개로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작성 및 구비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민들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다.

기존에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획득한 농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우리나라 세관의 원산지조사 등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서류 구비 없이도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된다. 만약 농가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유통을 거쳐 수출 또는 식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3종의 인증서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국내 고객사 및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직접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 상대국 세관에서 원산지검증 시, 해당 서류만 가지고 당해 물품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역내산 농산물이라고 인정해 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대국 세관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 외에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부터 FTA 활용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사진은 경남 거창의 산딸기 농장 모습. 산딸기는 일본 및 동남아로 수출된다.

농산물 특화 시스템 활용하면 원산지관리 쉬워져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각각 국제원산지정보원 및 케이티넷(KT-NET)과 협작해, 중소기업의 손쉽고 편리한 FTA 활용을 지원하고자 FTA-PASS 및 FTA-KOREA 등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이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원재료 입고부터 원제품 생산까지의 정보를 입력하면, 각 협정별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이력 관리 등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농민들의 원산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농수산식품의 FTA 활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대표품목의 표준 BOM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작성방법의 이해를 돋우고 있으며, 주요 농수산식품의 HS코드 검색기능을 추가해 품목분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농가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교육일정 및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처럼 간소화된 증명절차 및 시스템 활용을 발판으로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18만여 개의 경쟁력 있는 국내 친환경 생산농가의 농산물이 FTA 활용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길 기대해본다. ☺



한·미 FTA 사후검증 성공 노하우

제조공정 중심으로 증명서류를 작성하라

한·미 FTA가 발효된 후 2012년부터 사후검증이 서서히 수행됐는데, 검증 초반에는 미국 세관(CBP)이 요청하는 서류의 명칭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자재소요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만 형식에 맞추어 작성해 소명자료를 작성했었다. 따라서 자료간의 연관성이 결여되거나 실제 구매자료(거래명세서 등)와 일치하지 않아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

최근 컨설팅을 의뢰한 A사는 섬유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A사는 일부 품목은 직접생산하지 않고 국내에서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으로 공급받아 미국으로 수출했다.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사부터 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제품마다 섬유의 디자인, 혼방율, 색상, 재단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물품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각 제조 단계별로 물품의 이동과 어떠한 공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통해 입증하게 되는데, 실제 검증 시 미국의 CBP에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떤 공정은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조공정도에서 해당 공정을 제외하는 경우도 많고, 동일한 공장인데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회사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미국검증에 있어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그리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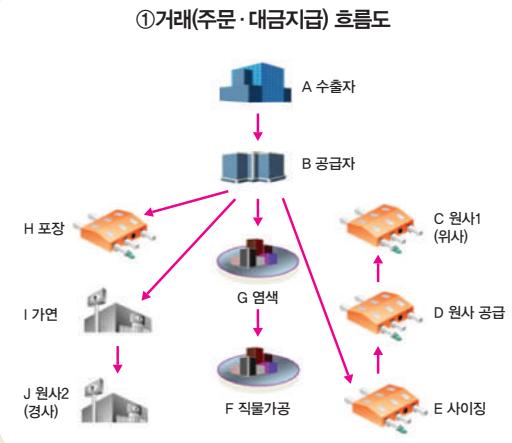
생산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제조공정도에 밝혀라

또한 다수의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제조하지는 않으나 수출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모든 제조과정을 콘트롤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콘트롤업체로부터 최종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CBP에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효력자체를 부인하고 실제 제조사로 볼 수 있는 업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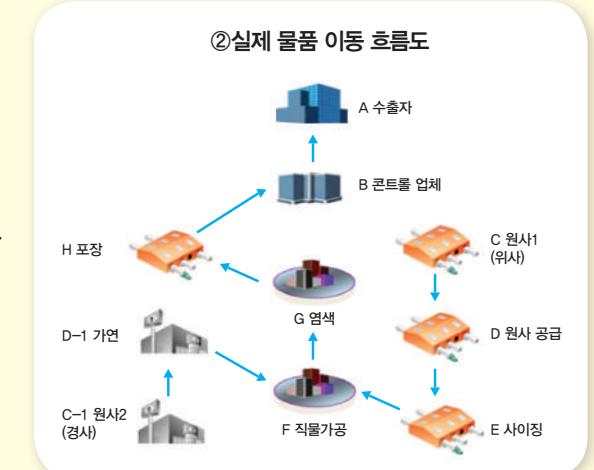
미국은 형식적인 서류의 유무보다는 실제로 제조했거나 제조하지 않더라도 모든 과정을 콘트롤하고 있는지가 핵심 검증포인트이므로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료를 직접 관리해 실제 원산지관리가 가능할지를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A사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검증에 실패했는데, CBP Form 29(결과통보서)상의 원산지 불충족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했다. 거래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실제 제조사도 아니며 원자료도 수출자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OEM 업체가 원자료를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료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해 CBP에 제출한 구매 자료를 분석하려고 보니 거래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검토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외부업체에서 가공을 하더라도 제조공정에 따라 원자재 또는



①거래(주문 · 대금지급) 흐름도



②실제 물품 이동 흐름도

수많은 외주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섬유제품 생산과정을 계약관계로 표시하면 세관 관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공정에서 물품의 이동 경로를 흐름도로 표시하면 제작과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간재로 이용되는 물품이 이동하면서 제조되는 일련의 흐름이 서류로 나타나야 하는데 입출고내역, 물품인수내역 등이 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구비한 상태였고, 임가공비 등의 대금지급은 각 공장과 수출자 A간에 이루어지는데, 물품은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상의 불일치가 검증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됐다.

FTA사후검증지원센터로 상담요청이 왔을 때는 이미 해당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며, 20일 이내에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혜택이 취소되고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CBP Form 29를 받은 상태였다. A사의 제출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서류만으로 거래관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업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세관원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따라서 미국 세관원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컨설팅을 진행했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업체에서 작성된 소명자료는 모든 제조과정을 콘트롤하는 B사가 어떤 협력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구매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돼 있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매주문내역과 입금내역으로 B사가 콘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①거래(주문 · 대금지급) 흐름도 참조). 그러나 서류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고, CBP로부터 불충족 판정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해 복잡한 물품의 흐름을 제조공정의 순서에 맞게 재구성 했다. (②실제 물품 이동 흐름도 참조)

해당 수출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구매해 사이징 가공을 한 후, D업체로부터 가연된 원사와 함께 혼방직물을 만들고 염색을 해 포장하는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 B가 모든 과정을 콘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B를 중심으로 해 제조공정도 작성했고, 직물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에 공급받는 자는 A에서 B로 모두 변경했다.

물품의 이동은 구매주문의 흐름과 다르게 B를 거치지 않고 다음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바로 이동되기 때문에 제조공정 순서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이동을 입출고 내역, 운송증빙서류 등으로 증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증명을 '업체중심'에서 '공정중심'으로 작성해 수출품의 전체 제조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제조공정도(Flow Chart)가 마련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인덱스(index: 목록)로 표시해 제출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원산지사후검증은 증명서류를 잘 보관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한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됐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검증자의 입장으로 고려해 소명자료를 작성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서범세 기자

보르헤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픽션들'이라는 단편소설집을 출간한
1944년쯤이다. 그것도 일반 독자들이
널리 읽어서가 아니라 그의 지적인
소설 장치에 푸코와 데리다 등 당대의
사상가들이 주목했기 때문이다.



Jorge Luis Borges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태생의 소설가이자
시인, 평론가. 환상적 사실주의에 기반한 단편들로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⑧보르헤스의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세상은 신이 만든 '한 권의 책'이자 미로와 같다

가장 난해한 소설을 쓴 작가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가 단연 꼽힌다. 그의 소설과 연구서를 읽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만날 수 있었다. 다른 아닌 보르헤스와 칸트와의 만남이다. 최초의 직업철학자로 불리는 칸트는 난해한 철학서로 악명 높다. 보르헤스는 칸트 철학에 매혹을 느꼈지만 '순수이성비판'을 독일어로 접하고서 그만 포기하고 칸트보다 한결 쉽게 쓴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는 신의 선형적 존재를 부정한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역설적이게도 보르헤스의 소설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는 것만큼이나 난해하다. 칸트 읽기를 포기한 보르헤스는 그 자신의 소설을 칸트의 책처럼 썼다고 할 정도다. 겨우 연구서를 보고서야 이해될 정도다. 예를 들어 단편소설 '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떼르띠우스'에서, "내가 우크바르를 발견한 것은 어떤 거울 하나와 백과사전을 접합시킨 덕분 이었다"라고 뜬금없는 말로 시작되는 첫 문장은 칸트의 철학서만큼 어렵게 다가온다.



1944년 단편소설집 '픽션들'로 유명해져

보르헤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픽션들'이라는 단편소설집을 출간한 1944년쯤이다. 그것도 일반 독자들이 널리 읽어서가 아니라 그의 지적인 소설 장치에 푸코와 데리다 등 당대의 사상가들이 주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소설에서 독자수용미학, 하이퍼텍스트, 상호텍스트, 후기구조주의 등 문학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1956년 '남부' 등 세 개의 단편을 첨가해 17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2판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픽션들'이다. 단편들은 크게 문학이론을 소설화시키고 있는 작품들과 형이상학적 주제를 소설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두 범주로 나뉜다.

이 소설집은 하나같이 만만하지 않다. 책장을 넘길수록 '이런 것이 과연 소설일까?'하는 의문마저 생긴다. 그나마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은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과 '원형의 폐허' 등 몇 편에 불과하다.

이 중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을 이탈리아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는 '왜 고전을 읽는가'에서 현대작가가 쓴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설의 주제가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며 형이상학적 주제를 텁정소설의 장치를 통해 다루어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줄거리는 스파이 임무 수행과 정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눈다. 칭다오 대학 영문학 교수 출신인 유춘은 독일제국 스파이로 영국에서 활약하는데 영국군 첨보장교 리처드 메든 대위에게 신분이 밝각된다. 그는 쫓기면서도 자신이 알아낸 기밀, 즉 영국군 포병대가 주둔한 정확한 위치를 독일 베를린 정보부의 상관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그 방법이 텁정소설을 방불케 한다. 그는 기밀을 알려줄 수 있는 단서를 지닌 이름을 전화번호부에서 찾고서 그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탄다. 기차가 출발하자 미행하던 메든 대위가 쫓아오는 게 보였다. 메든 대위는 40분 후의 다음 차를 탈 것이고 유춘은 그 사이에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는 중국인 학자인 스티븐 알버트 박사를 찾아간다. 알버트 박사는 자기를 찾아온 유춘에게 이전의 다른 중국인들처럼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의 정원'을 보려 왔느냐고 물었다. 유춘은 자기 증조부 취팽이 만든 바로 그 미로정원이 알버트 박사의 집에 있는 '정원'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취팽은 원난 성 성주였는데 '흉루동'보다 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소설을 쓰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길을 잊게 될 미로를 만들기 위해 성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13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자신의 계획에 몰두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이방인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의 미로는 분실

되고 말았다. 그 미로가 다른 아닌 알버트의 손에 훌려 들어와 있는 것 이었다.

알버트는 그 미로를 연구하여 신비로운 정체를 밝혀냈다고 한다. 미로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곧 한 권의 소설책이었다. 일반 소설 속에서 시간은 한 가지만 일어나고, 독자는 그 사건을 단순히 쫓아가게 되지만 취팽의 책에서 사건은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 독자는 모든 것을 동시에 선택하게 된다. 취팽이 설계한 미로는 '시간의 그물'로 이뤄져 있었다. 셀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영원히 갈라지는 시간처럼 소설의 이야기도 무한히 갈라져 다양한 결말들이 함께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의 줄거리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줄거리가 퍼져나가는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알버트로부터 고조부 취팽이 건설했던 미로의 비밀을 듣고 난 유춘의 눈에 창밖으로 메든 대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유춘은 총을 꺼내 알버트 박사를 살해했다. 그 순간 메든 대위가 뛰어들어 유춘을 체포했다. 이튿날 저명한 중국학자 알버트 박사가 정체불명의 유춘이라는 중국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유춘의 상관인 베를린의 독일군 대장은 그 기사를 통해 영국 포병대가 알버트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알버트 시에 폭격을 가했다. 유춘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임무를 완수했다. 우리는 많은 가능성이 얹혀 있는 '시간의 그물'에 살고 있다. 필연과 우연히 얹혀 엮어내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주는 곧 시간의 미로이며, 인생은 그 미로 속을 헤매는 것이다. 알버트는 '시간의 그물'에 포획되어 살해당한다. 유춘 또한 마찬가지다.

그 자신도 '시간의 그물'에 갇힌 삶이었다

보르헤스를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의 하나는 '도서관의 작가'이다. 작가와 교수 외에 그가 가졌던 유일한 직업은 도서관 사서였다. 그는 74살에 도서관장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도서관에서 지냈다. 그의 대표적인 단편인 '바벨의 도서관'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은 웰베르트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모티브를 제공했다.

보르헤스가 소설에서 천착한 주제는 시간과 무한이다. 그의 소설에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글이 전무하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불행한 사랑 때문인지도 모른다. 보르헤스는 첫사랑에 실패하고 엘사 아스페페라는 여성을 알게 되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린다. 보르헤스는 그녀가 과부가 되자 다시 프리포즈해 결혼했는데, 그때 나이 68세였다. 두 번째 결혼은 87세 때로 두 달 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보르헤스 또한 '시간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정리 김보람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제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세계 통상흐름 선제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주문



특유치 활성화, 통상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세부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 DDA) 작업계획 및 복수국간 협상의 대응전략 △APEC 통상장관회의 의제인 지역경제통합 증진 및 중소기업의 지역·세계시장 참여 활성화 △국익을 고려한 TPP 대응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윤상직 장관은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외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진한 결과,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완료, 중남미·중동 등 신흥국과의 활발한 경제외교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간 민간전문가와 정부의 소통을 평가하고 “다만, 최근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지역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신흥시장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정책과 세부실천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0일 제6차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新)통상 추진방향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안세영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의 통상전문가가 참석했다.

논의의 안건은 △신통상로드맵 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 △WTO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APEC 통상장관회의 참가계획 △TPP 최근동향 및 대응방향이었다. 회의에서는 2013년 수립한 신통상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분석해 산업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후속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추진한 FTA 네트워크 확대, FTA 활용기반 마련, 소통·협업 체결구축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신흥국과의 신FTA,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상협력, 효과적인 메가 FTA 대응 등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후속대책을 토론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명단(총 29명, 가나다 순)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희(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김의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섭(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남영숙(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박덕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철원(승설대 법과대학 교수), 성극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재희(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주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경기대 경제학 교수),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미정(특허법인 이름 대표변리사), 안세영(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호(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영(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본부장),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최경수(한국자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최낙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선임연구위원), 최원록(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인수(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한홍렬(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7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회의실에서 'FTA 개성공단 간담회(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를 열었다(제1회 FTA 원산지 간담회는 4월 24일 개최). 이번 간담회는 그간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관련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주재), FTA교섭관,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통일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협상이 진행된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의 FTA에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체결 FTA 개성공단 조항 현황

역외가공 방식

FTA 체결국의 재료·반제품을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후 수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위원회 방식

FTA 체결국 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 결정. (EU,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015년 5월 현재 미발효 FTA

특히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는 입주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한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학도 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우리 기(既)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평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 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Information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9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란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p>한·중 및 한·베트남 FTA를 통해 유명 상품 선점과 짹통유통 등 지재권 침해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FTA를 통해 아시아의 경제교류가 촉진되고 불법적인 국제경제유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혜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축전길</p> <p>커버스토리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과 한국의 FTA 전략'에서 중남미 국가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로 시작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현황을 알게 됐습니다. 각각의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교역으로 더 많은 분야의 협력과</p>	<p>정과 노력해야 할 점들을 보니 앞으로의 발전과정이 기대가 됩니다. 김현수 울산시 동구 봉수로</p> <p>한·중 FTA TBT 협정 주요내용 기사가 저한테 가장 유익했던 것 같아요. 중국 쪽 수입, 수출 비중이 높아서 열심히 정독했습니다. 이정희 전북 익산시 석암로</p> <p>중남미와의 FTA 체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았습니다. 특히 중남미의 전 나라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면적이나 인구수 특히 GDP 순위를 보</p>
<p>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이은숙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p> <p>이번 호는 중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한 기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남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 좋았습니다. 특히 커버스토리의 '중남미에 대해 알아봅시다'가 좋았는데요, 지도와 함께 주요정보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FTA 뿐만 아니라 여행가는 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 장철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p>	

“전화 한번으로 기업 애로 해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월~금, 09:00~18:00)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기업마당** www.1357.go.kr

W 자금 상담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의 정책자금 및 기보/신보 보증관련 상담

기술개발(R&D) 상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신청부터 사업비 사용 승인까지 상담

창업 상담

법인설립절차, 공장설립, 창업보육센터 입주 문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 등 창업관련 절차/법·제도/지원 상담

소상공인 상담

소기업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환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상담

판로/수출 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전시회, FTA 활용 등 수출지원 상담

인력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